

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□ **변경 사유** :

- ① 판매보수 인하 (C클래스 : 1.00% → 0.80% / Ce클래스 : 0.50% → 0.40%)
- ② 이익분배 방식 변경 (전액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)
- ③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8. 6. 22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-----	-------	-------

요약 정보

	C 클래스	C 클래스
	<u>판매 : 1.000%</u>	<u>판매 : 0.800%</u>
	운용 등 : 0.187%	운용 등 : 0.187%
	기타 : 0.002%	기타 : 0.002%
	<u>총보수·비용 : 1.189%</u>	<u>총보수·비용 : 0.989%</u>
보수(연, %)	<u>합성 총보수·비용 : 1.189%</u>	<u>합성 총보수·비용 : 0.989%</u>
	Ce 클래스	Ce 클래스
	<u>판매 : 0.500%</u>	<u>판매 : 0.400%</u>
	운용 등 : 0.187%	운용 등 : 0.187%
	기타 : 0.002%	기타 : 0.002%
	<u>총보수·비용 : 0.689%</u>	<u>총보수·비용 : 0.589%</u>
	<u>합성 총보수·비용 : 0.689%</u>	<u>합성 총보수·비용 : 0.589%</u>
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

정보

[1]. 투자전략

2018. 1. 31. 기준

2018. 5. 31. 기준

4. 운용전문인력
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

정보

[1]. 투자전략

-

2018. 3. 6. 기준

5. 투자실적 추이

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4. 집합투자업자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(여의도 동, 10 층)	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(성수동 1 가)
5. 운용전문인력	2018. 1. 31. 기준	2018. 5. 31. 기준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	
	C 클래스	C 클래스
	<u>판매 : 1.000%</u>	<u>판매 : 0.800%</u>
	신탁회사보수 : 0.020%	신탁회사보수 : 0.020%
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0.017%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0.017%
	기타비용: 0.002%	기타비용: 0.002%
	<u>총보수·비용 : 1.189%</u>	<u>총보수·비용 : 0.989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u>합성 총보수·비용 : 1.189%</u>	<u>합성 총보수·비용 : 0.989%</u>
	증권거래비용 : 0.059%	증권거래비용 : 0.059%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Ce 클래스	Ce 클래스
	<u>판매 : 0.500%</u>	<u>판매 : 0.400%</u>
	신탁회사보수 : 0.020%	신탁회사보수 : 0.020%
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0.017%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0.017%
	기타비용: 0.002%	기타비용: 0.002%
	<u>총보수·비용 : 0.689%</u>	<u>총보수·비용 : 0.589%</u>
	<u>합성 총보수·비용 : 0.689%</u>	<u>합성 총보수·비용 : 0.589%</u>
	증권거래비용 : 0.059%	증권거래비용 : 0.059%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  
 가. 이익 배분  
 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

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

※ 2018년 6월 22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 -  
 에 관한 사항  
 나. 과세

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
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

---

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5) 퇴직연금제도의 과세**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과세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②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: 연금인출,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③ 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(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300 만원 이내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---



1. 재무정보	-	<u>2018. 3. 6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-	<u>2018. 3. 6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-	<u>2018. 3. 6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, 10 층 (여의도동)	<u>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(성수동 1가)</u>